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하는

2020년도 한들교육과정 설명회



전 주 한 들 초 등 학 교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 하는

차

레

1. 학교 상징	1
2. 학교장 경영관	2
3. 학교 교육 목표	3
4. 학교 중점 과제	4
5. 연간 학사일정 및 행사 운영계획	6
6. 학년별 일과시간 운영 및 주간 수업 시간 수	8
7. 2020년도 한들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 연수자료	9
○ 공교육정상화법 안내	9
○ 청렴교육 학부모연수	10
○ 아동학대예방 학부모 연수	12
○ 가정폭력예방 학부모 연수	16
○ 학부모와 함께하는 학교폭력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18
○ 도박예방 학부모 연수	20
○ 아동인권교육 학부모 연수	22
○ 자살(해)예방 학부모연수	24
○ 교권보호 학부모연수	25
○ 보건(성폭력, 흡연예방, 양성평등교육)학부모 연수	27
○ 교외체험학습(출결상황)안내	30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안내	32
○ 2019학년도 전주한들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칙	33
○ 2020 학교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서	36
○ 전주한들초등학교 시설공사 집행내역	40
* 학교 교실 배치도	42

학 교 상 징

교 표	교 목	소나무	교 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떠오르는 태양, 삼천, 넓은 들, 자라나는 새싹을 형상화함 ▶ 함께하는 한들교육을 의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나무과의 상록침엽교목 ▶ 십장생 중 하나임 ▶ 기개와 강한 의지 본받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달래과의 낙엽관목 ▶ 5월에 연분홍색의 꽃이 펴 ▶ 명랑한 기상, 민족의 정서 본받기 	

교 가

이윤상 작사
 김석근 작곡



모 악 - 산 높은 정 기 가 숨 에 안 고
 활 방 - 산 푸른 정 기 훌 백 마 시 며
 삼 천 - 내 맑은 물 에 마 음 을 씻 는
 중 화 - 산 넓은 별 관 중 심 에 서 서
 새 역 사 창 조 해 갈 한 들 꿈 동 이
 내 나 라 크 게 빛 낼 한 들 꿈 동 이
 날 마 다 보 람 자 고 신 나 는 학 - 교
 새 롭 게 떠 오 르 는 즐 거 운 학 - 교
 한 마 - 음 한 뜻 으 로 굳 게 뭉 쳐 서
 빛 내 - 자 꽃 피 우 자 전 주 의 한 들



학교장 경영관

학생, 교사, 학부모가 모두 만족하는 학교 경영으로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꿈나무들의 기초 학력과 기본 생활습관을
충실하게 다지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협동할 줄 아는 창의적 글로벌 인재 **참사람** 육성

학교장 **교육비전** -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하는 어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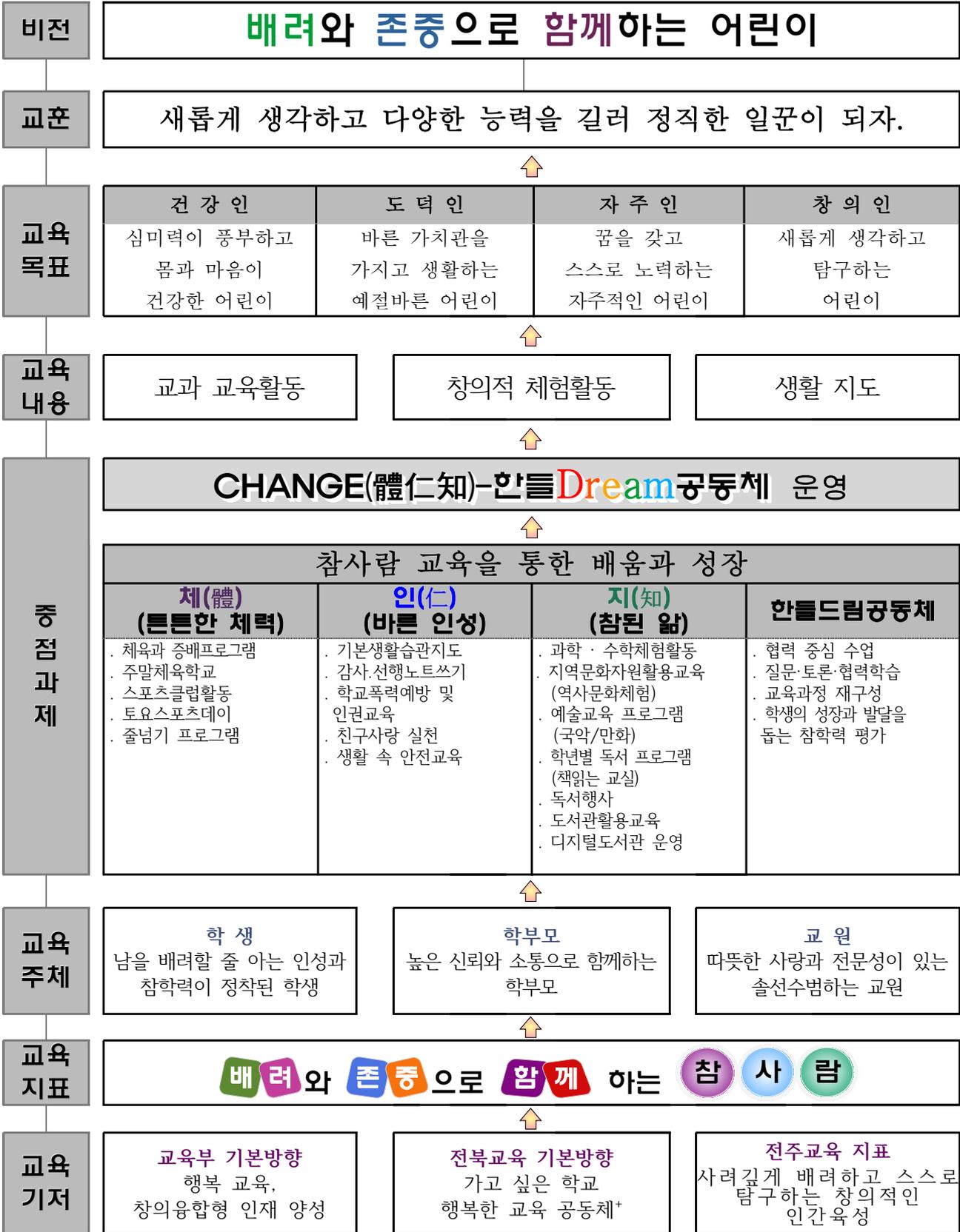


- 첫째,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 수요자가 만족하는 학교
- 둘째, 학생의 인권과 개성을 존중하며 소질계발을 위한 여건이 조성된 학교
- 셋째, 구성원의 협의를 통한 협력하는 교육 공동체 학교





학교 교육 목표





참사람 교육을 통한 배움과 성장

CHANGE 한들 - 전문적 학습공동체 + 자치공동체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식, 가치와 태도,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 미래를 살아갈 역량 기르기 ▶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및 수업혁신으로 참학력 신장 ▶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의 권리와 참여 보장 ▶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
-----------	--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 자치 활동 활성화 ▶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회 운영 - 녹색어머니회(교통안전 도우미) 활동 - 교육활동 지원 - 학부모 연수 및 동아리 활동 ▶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들드림공동체(학습공동체동아리) 운영 - 교육과정운영 및 평가 - 수업 나눔 - 학교 규칙 제·개정 - 교무회의 ▶ 학생의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협력 중심 수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문하기, 비판적 사고 기르기 - 친구와 협력학습 - 체험, 토의, 토론식 수업 - 프로젝트 수업 ▶ 교사의 자율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기준 중심 - 핵심역량 중심 - 교과서 재구성 ▶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의 과정 중에 진행되는 평가 - 수시 평가에 따른 결과 알림 - 수업의 질 지속적 개선
-------------	--

체(體) - 튼튼한 체력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기차고 건강한 삶에 필요한 기초 체력 증진, 자신감, 도전정신 기르기 ▶ 활기찬 학교 분위기 조성과 올바른 여가 활동의 방향 제시
-----------	--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체육과 프로그램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대상</th> <th>활동명</th> <th>활동장소</th> </tr> </thead> <tbody> <tr> <td>제3학년</td> <td>수영</td> <td>수영장</td> </tr> <tr> <td>제4학년</td> <td>수영</td> <td>수영장</td> </tr> </tbody> </table> ▶ 주말체육활동(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토요일스포츠데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작은 운동회 ▶ 학년별 줄넘기 프로그램 운영 <table border="1" style="margin-top: 10px;"> <thead> <tr> <th>제1학년</th> <th>제2학년</th> <th>제3학년</th> </tr> </thead> <tbody> <tr> <td>1단 뛰기</td> <td>구보 뛰기</td> <td>구보 뛰기</td> </tr> <tr> <th>제4학년</th> <th>제5학년</th> <th>제6학년</th> </tr> <tr> <td>단체줄넘기</td> <td>2단 뛰기</td> <td>2단 뛰기</td> </tr> </tbody> </table> ▶ 스포츠클럽 운영 ▶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한들한마당 ▶ 스포츠리그전운영(제6학년) 	대상	활동명	활동장소	제3학년	수영	수영장	제4학년	수영	수영장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1단 뛰기	구보 뛰기	구보 뛰기	제4학년	제5학년	제6학년	단체줄넘기	2단 뛰기	2단 뛰기
대상	활동명	활동장소																				
제3학년	수영	수영장																				
제4학년	수영	수영장																				
제1학년	제2학년	제3학년																				
1단 뛰기	구보 뛰기	구보 뛰기																				
제4학년	제5학년	제6학년																				
단체줄넘기	2단 뛰기	2단 뛰기																				

인(仁) - 바른 인성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한 바른 인성 함양 ▶ 가정·학교·사회와의 연계성을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생활습관지도 ▶ 생활협약 정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학생·학부모 생활 협약 정하기 ▶ 긍정적 자아개념형성 지도 ▶ 친구 사랑 실천 ▶ 감사·선행 노트 쓰기 ▶ 학교폭력예방 교육 ▶ 수업 속에 인성 교육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 하는 교육 - 협동심, 공동체 의식 함양 지도 ▶ 바른글씨쓰기교육 ▶ 생활 속에 안전교육

지(知) - 참된 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를 알고 세상과 소통하며 다양한 재능 개발 ▶ 풍부한 감수성, 창의적인 표현 능력, 비평 능력 향상 ▶ 삶의 지혜와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삶의 가치들을 배움 ▶ 토론 중심의 교수·학습활동을 통하여 교실수업개선 및 아동의 창의적인 사고력 신장 	목적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수학체험활동(수학나눔학교) ▶ 역사문화체험(지역문화자원활용교육) ▶ 학년별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활동명</th> </tr> </thead> <tbody> <tr> <td>제1~2학년</td> <td>동요(음악)</td> </tr> <tr> <td>제3~4학년</td> <td>리코더(음악)</td> </tr> <tr> <td>제5~6학년</td> <td>캘리그래피(미술)</td> </tr> </tbody> </table>	대상	활동명	제1~2학년	동요(음악)	제3~4학년	리코더(음악)	제5~6학년	캘리그래피(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험활동과 연계한 예술 교육 ▶ 체험중심의 현장학습 ▶ 학년별 특색활동 운영 ▶ 방과후 예술교육 활동 	추진내용
대상	활동명										
제1~2학년	동요(음악)										
제3~4학년	리코더(음악)										
제5~6학년	캘리그래피(미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의 생활화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활동명</th> </tr> </thead> <tbody> <tr> <td>제1~2학년</td> <td>책 읽어주기 (교사, 학부모, 선배)</td> </tr> <tr> <td>제3~4학년</td> <td>한 학년 한 책 읽기</td> </tr> <tr> <td>제5~6학년</td> <td>책 읽는 교실</td> </tr> </tbody> </table>	대상	활동명	제1~2학년	책 읽어주기 (교사, 학부모, 선배)	제3~4학년	한 학년 한 책 읽기	제5~6학년	책 읽는 교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국어) <table border="1"> <thead> <tr> <th>대상</th> <th>활동명</th> </tr> </thead> <tbody> <tr> <td>제1~2학년</td> <td>독후 표현 활동</td> </tr> <tr> <td>제3~4학년</td> <td>독서 골든벨 활동</td> </tr> <tr> <td>제5~6학년</td> <td>독서 토의 활동</td> </tr> </tbody> </table>	대상	활동명	제1~2학년	독후 표현 활동	제3~4학년	독서 골든벨 활동	제5~6학년	독서 토의 활동
대상	활동명																	
제1~2학년	책 읽어주기 (교사, 학부모, 선배)																	
제3~4학년	한 학년 한 책 읽기																	
제5~6학년	책 읽는 교실																	
대상	활동명																	
제1~2학년	독후 표현 활동																	
제3~4학년	독서 골든벨 활동																	
제5~6학년	독서 토의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실 운영-도서관활용수업 																



연간 학사일정 및 행사 운영 계획



□ 연간 학사 일정 및 주요 행사

1학기(2020.3.1.~2020.9.3.)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 일	삼일절	1 수	코로나 휴업	1 금	재량휴업일	1 월	공동체세움주간(~5) 친구사랑주간(~5)	1 수		1 토	여름방학 8.1.~8.19.(19일)
2 월	코로나 휴업	2 목	코로나 휴업	2 토		2 화	합동생명현연	2 목		2 일	
3 화	코로나 휴업	3 금	코로나 휴업	3 일		3 수	신체발달 시력측정 (2,3,5,6학년)	3 금		3 월	
4 수	코로나 휴업	4 토		4 월	재량휴업일	4 목		4 토		4 화	
5 목	코로나 휴업	5 일		5 화	어린이날	5 금	과학축전 (1~3학년)	5 일		5 수	
6 금	코로나 휴업	6 월		6 수		6 토	현충일	6 월		6 목	
7 토		7 화		7 목		7 일		7 화		7 금	
8 일		8 수		8 금	교육과정설명회 (학교 홈페이지 게시)	8 월	구경사 (2,3,5,6학년) 졸내기대회주간 방과후학교 공개주간	8 수		8 토	
9 월	코로나 휴업	9 목		9 토		9 화		9 목		9 일	
10 화	코로나 휴업	10 금		10 일		10 수	소변검사(2,3,5,6학년)	10 금		10 월	
11 수	코로나 휴업	11 토		11 월		11 목	전교어린이회 선거 (4~6학년)	11 토		11 화	
12 목	코로나 휴업	12 일		12 화	기초학력진단검사 (6학년) -> 등교이후로 연기	12 금	학급어린이회 조직 (4~6학년) vee센터 학폭예방교육 (4학년)	12 일		12 수	
13 금	코로나 휴업	13 월		13 수		13 토		13 월	친구사랑주간(~17)	13 목	
14 토		14 화		14 목		14 일		14 화		14 금	
15 일		15 수	국회의원선거일	15 금		15 월	상당주간(전학년) (~19)	15 수		15 토	광복절
16 월	코로나 휴업	16 목	시업식(4~6학년) 정보통신윤리교육 (4~6학년)	16 토		16 화		16 목		16 일	
17 화	코로나 휴업	17 금		17 일		17 수		17 금	교육과정워크숍	17 월	
18 수	코로나 휴업	18 토		18 월		18 목	한들한들마당(1~3학년)	18 토		18 화	
19 목	코로나 휴업	19 일		19 화		19 금	한들한들마당(4,5학년)	19 일		19 수	
20 금	코로나 휴업	20 월	시업식(1~3학년) 장애인개선교육 (전학년) 정보통신윤리교육 (3학년)	20 수	과학실험실안전교육 ~22 (전학년)	20 토		20 월		20 목	여름개학식
21 토		21 화	정보통신윤리교육 (1~2학년)	21 목		21 일		21 화		21 금	
22 일		22 수		22 금	굿네이버스 학교폭력 예방교육(3,4학년)	22 월	교통안전교육(1학년)	22 수		22 토	
23 월	코로나 휴업	23 목		23 토		23 화	교통안전교육(2학년)	23 목		23 일	
24 화	코로나 휴업	24 금		24 일		24 수	교통안전교육(3학년)	24 금		24 월	
25 수	코로나 휴업	25 토		25 월	흡연예방캠페인(4학년) 통일교육주간(전학년)	25 목	학생자치협의회 (4~6학년)	25 토		25 화	
26 목	코로나 휴업	26 일		26 화	굿네이버스 학교폭력 예방교육(5,6학년)	26 금		26 일		26 수	
27 금	코로나 휴업	27 월	영양생활교육 (전학년) 생명존중의 달(4,5월)	27 수	한들한들과학행사 (4~6학년)-> 등교 이후 연기	27 토		27 월		27 목	
28 토		28 화		28 목	PAPS측정(5학년)	28 일		28 화		28 금	
29 일		29 수		29 금	PAPS측정(6학년)	29 월		29 수		29 토	
30 월	코로나 휴업	30 목	석가탄신일	30 토		30 화		30 목		30 일	
31 화	코로나 휴업			31 일				31 금	여름방학식	31 월	
수업일	0		10(8)		18		22		23		8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 화	개교기념일	1 목	추석	1 일		1 화		1 금	신정	1 월	
2 수		2 금	추석연휴	2 월	체험관 성교육 (6학년5.6) 스포츠리그주간 (6학년)	2 수		2 토		2 화	
3 목	1학기 종료일	3 토	개천절	3 화	지체소방훈련 (전학년)	3 목		3 일		3 수	
4 금	2학기 시작일 생명존중의 달(9월)	4 일		4 수	4지역문화지원교육 (1팀) 6지역문화지원교육 (1팀) 흡연예방이동극 (1.2학년)	4 금		4 월		4 목	
5 토		5 월	찾아오는 성교위 (5학년)	5 목	4지역문화지원교육 (2팀) 6지역문화지원교육 (2팀)	5 토		5 화		5 금	
6 일		6 화		6 금	4지역문화지원교육 (3팀) 6지역문화지원교육 (3팀)	6 일		6 수		6 토	
7 월	과학실험실안전교육	7 수		7 토		7 월		7 목		7 일	
8 화		8 목		8 일		8 화	5학년119안전체험	8 금		8 월	
9 수		9 금	한글날	9 월	방과후학교 공개주간	9 수	교육과정평가기간 (~15)	9 토		9 화	
10 목	6테마식체험학습	10 토		10 화		10 목		10 일		10 수	
11 금	6테마식체험학습	11 일		11 수		11 금		11 월		11 목	설연휴
12 토		12 월	4학년 수영교육 (43학급) 찾아오는 성교육 (5학년)	12 목		12 토		12 화		12 금	설날
13 일		13 화	3지역문화지원교육 (1팀)	13 금	5학년 영어체험(1,2)	13 일		13 수		13 토	설연휴
14 월	영양식생활교육 상담주간(1~5학년)	14 수	3지역문화지원교육 (2팀) 지역문화지원교육 (1팀)	14 토		14 월		14 목		14 일	
15 화	2지역문화지원교육 (1팀)	15 목	4학년 수영교육 (33학급) 지역문화지원교육 (2팀)	15 일		15 화		15 금	종업식 및 졸업식	15 월	
16 수	2지역문화지원교육 (2팀)	16 금	지역문화지원교육 (3팀)	16 월	5학년 영어체험(1,2)	16 수		16 토	학기말방학 (1.16~2.28.) (44일)	16 화	
17 목	5지역문화지원교육(1팀) 3학년수영교육(23학급)	17 토		17 화	5학년 영어체험(3-5)	17 목		17 일		17 수	
18 금	5지역문화지원교육(2팀)	18 일		18 수	5학년 영어체험(3-5)	18 금	교육과정워크숍	18 월		18 목	
19 토		19 월	독서행사기간(~30) 학교폭력예방교육 (1.2학년)	19 목		19 토		19 화		19 금	
20 일		20 화		20 금	진로+꿈끼	20 일		20 수		20 토	
21 월	4학년 현장체험	21 수		21 토		21 월		21 목		21 일	
22 화	3학년수영교육 (~24.2학급)	22 목	학교폭력예방교육 (3학년)	22 일		22 화		22 금		22 월	
23 수		23 금	3학년 현장체험 학생자담회(456학년)	23 월		23 수	2학년119안전체험	23 토		23 화	
24 목	전교어린이회 선거 (4-6학년)	24 토		24 화		24 목		24 일		24 수	
25 금	학급어린이회 조직 (4-6학년)	25 일		25 수		25 금	성탄절	25 월		25 목	
26 토		26 월	학교폭력예방교육 (4학년) 체험관 성교육 (6학년1,2)	26 목		26 토		26 화		26 금	
27 일		27 화	체험관 성교육 (6학년3,4)	27 금		27 일		27 수		27 토	
28 월		28 수	학교(수업)공개일 날	28 토		28 월		28 목		28 일	
29 화	1학년 현장체험 4학년 에듀버스활용교육	29 목	상담주간(6학년)	29 일		29 화		29 금			
30 수	추석	30 금		30 월		30 수		30 토			
		31 토				31 목		31 일			
수업일	18(2/18)		19		21		22		10		0

※ 수업일수 : 1학기 83(81)일, 2학기 90일 계:173(171)일

※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계획은 달라질 수 있음.

▣ 1학기 수업일수(1~3학년/4~6학년)

구분 \ 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계	비고
일 수	31	30	31	30	31	31	3	187	여름방학 기간 19일
수업일수	0	8/10	18	22	23	8	2	81/83	
휴일 및 휴업일	31	22/20	13	8	8	23	1	106/104	

▣ 2학기 수업일수

구분 \ 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계	비고
일 수	27	31	30	31	31	28	178	학년별방학 기간 44일
수업일수	18	19	21	22	10	0	90	
휴일 및 휴업일	9	12	9	9	21	28	88	

▣ 연간 수업일수

학 기	1학기 (2020. 3. 1. ~ 9. 3.)	2학기 (2020. 9. 4. ~ 2021. 2. 28.)	계
수업일수	81/86	90	171/173
휴일 일 수	106/104	88	194/192



일과 시간 운영 및 블록타임제 운영 계획



▣ 학년별 일과 시간 운영 계획

구분	1~2학년	구분	3~4학년	구분	5~6학년
수업준비	08:50~09:00	수업준비	08:50~09:00	수업준비	08:50~09:00
1블록	1교시 09:00~09:40	1블록	1교시 09:00~09:40	1블록	1교시 09:00~09:40
	2교시 09:50~10:30		2교시 09:50~10:30		2교시 09:50~10:30
2블록	3교시 10:40~11:20	2블록	3교시 10:40~11:20	2블록	3교시 10:40~11:20
	4교시 11:20~12:00		4교시 11:30~12:10		4교시 11:30~12:10
점심 및 청소	12:00~12:40	점심 및 청소	5교시 12:10~12:50	점심 및 청소	12:10~13:10
5교시	12:40~13:20		점심 및 청소	12:50~13:20	5교시
방과후 활동	13:30~	방과후 활동	6교시 13:20~14:00	3블록	6교시 14:00~14:40
			방과후 활동		14:10~

▣ 학년별 주간 수업 시간 수

학년 \ 요일	월	화	수	목	금	주당 시간 수
1 학년	4	5	5	5	4(5)	23(24)
2 학년	4	5	5	5	4(5)	23(24)
3 학년	5	5	5	6	5	26
4 학년	5	5	5	6	5	26
5 학년	6	6	5	6	6	29
6 학년	6	6	5	6	6	29

* 1~6학년 : 주당 시간수로 운영하되, 교육 과정에 따라 변동 운영이 가능함.

* 1학년 : 입학초 적응활동 50차시 운영함.



공교육법 정상화법 안내 학부모 교육 연수자료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공교육정상화법’ 시행 2014.9.12)

공교육정상화법은 초·중·고등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하거나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평가 등을 금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또한 중·고교와 대학의 입학전형도 각급 학교 입학 단계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합니다.

학생들이 미리 배워 와야 하는 수업이나 시험출제를 막아 초·중·고등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학습을 통해 건강한 신체발달을 도모하는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공교육 정상화법 세부 추진 내용

- 1)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학교교육과정 운영
 -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 내에서 학교수업 및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실시
- 2)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 학교시험(지필, 수행평가 등) 및 각종 교내대회 등은 배운 내용에서 출제
- 3)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전형
 - 대학,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입학전형은 입학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시행
- 4) 학원 사교육기관의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홍보 금지
 - 선행학습 유발 광고 또는 홍보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도
 -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사교육기관의 동참 유도

◎ 주요 질문과 응답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법의 이해

Q: 공교육정상화법의 시행으로 학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은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과 마찬가지로 국가수준 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수준과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편성된 학교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교사의 수업권과 평가권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Q: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에서 선행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선행교육 또는 선행학습은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이루어진 교육 또는 학습을 의미합니다. 통상적으로 교수·학습 및 평가는 학기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학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학교교육과정에서 편성한 학기, 학년 또는 학교급별 교육내용을 넘어서는 것을 가르치거나 평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는 선행학습도 이 법에 따라 금지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법에서 학습자가 자발성을 가지고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선행학습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육과정으로 앞서서 지도하는 선행교육, 그리고 학교 시험이나 상급학교 입학 전형 등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청렴교육 학부모 교육 연수자료

불법촌지수수근절, 불법찬조금 없는 맑고 깨끗한 학교를 만들어요.

◆ 학교발전기금이란?

학교 교육시설의 보수나 확충,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 학교 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학부모, 지역주민, 독지가, 기업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기금으로서, 기금의 조성 및 운영 주체는 학교가 아닌 학교운영위원회입니다.

◆ 불법찬조금이란?

학교운영위원회가 아닌 학부모나 이와 유사한 학부모 단체에서 임의로 찬조금을 조성하는 사례, 자발적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모금하는 사례,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최저액을 고지하는 사례 등은 찬조금품의 불법 모금입니다.

◎ 불법찬조금품 모금 사례 및 사용 사례 ◎

불법찬조금품 모금 사례	불법찬조금품 사용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회대표(학년별, 학급별)의 주도로 학부모들에게 일정금액을 할당하거나, 학부모 모임을 갖고 참석자들에게 일정모금액을 모금 ○ 학생회 간부, 학급 간부 학생의 학부모들이 모임을 구성하여 학부모들로부터 불법적으로 일정액을 모금 ○ <u>어머니회 등 학부모 자생단체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자체운영비, 학생간식비, 학교운영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모금</u> ○ 학교에서 학부모회 등 자생단체를 해산하였거나, 단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하여 단체가 없음에도 학부모 단체를 빙자한 모금 ○ 교기육성, 각종 경기대회 출전경비, 전지훈련경비 명목 등 관련 학부모로부터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모금 ○ <u>학부모 상담, 스승의 날 등을 통한 촌지수수</u> ○ 학교와 관련 있는 업체에게 불법적으로 모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승의 날, 체육대회, 현장학습 등의 교육활동 시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여 각종 경비 부담 또는 지원 ○ 학생 간식, 교직원 선물 및 회식, 담임교사 사례 등의 경비 지원 ○ 학예발표회, 체육대회, 현장학습, 수학여행, 수련회 등 행사경비 지원 ○ 기부제한대상 물품(교직원 체육복 등)제공

◆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위하여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관련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 홈페이지(www.jbe.go.kr)/참여마당/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 촌지수수 신고(☎ 063-239-3297 교원인사과)

○ 불법찬조금 신고(☎ 063-239-3576 예산과)

아동학대 예방 학부모 교육 연수자료

전주한들초등학교

I 목적

- 아동학대 방지와 대응을 위한 인식 개선 및 예방교육 강화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아동학대 대상 아동보호 강화
-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을 통한 아동안전 확보

II 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시행 2015.9.28.] [법률 제13259호, 2015.3.27., 일부개정]
- 아동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5.10.6.] [대통령령 제26578호, 2015.10.6., 일부개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2014.9.29.] [법률 제12341호, 2014.1.28., 제정]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시행 2014.9.29.] [법률 제12341호, 2014.1.28., 제정]

III 용어정의

- [아동], [아동학대]
 - 아동복지법 [시행 2015.9.28.] [법률 제13259호, 2015.3.27., 일부개정]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 ◆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_유형

◆ 신체학대(Physic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 7호)

내 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비트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 •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 •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들, 신체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달, 물에 빠뜨림 등) •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

◆ 정서학대(Emotion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 3조 제 7호)

내 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도 한다.
구체적인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 • 잠을 재우지 않는 것 • 별거벗겨 내쫓는 행위 •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 •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 •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 아동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 •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 • 아동의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아동 노동 착취) • 다른 아동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성 학대(Sexual Abuse)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내 용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 (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 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하는 행위 등) • 아동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 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 • 아동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 • 성교를 하는 행위(성기삽입, 구강성교, 항문성교) •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 방임(Neglect)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내 용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인 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보호자가 아동들을 가정 내 두고 가출한 경우 • 보호자가 아동을 시설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 • 교육적 방임 • 보호자가 아동을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의 무단 결석을 방치하는 행위 •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중학교를 의미함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무단결석이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하는 경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 의료적 방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 • 유기 •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 •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 • 시설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

아동학대_신고

언제?



-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

무엇을?



-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 아동이 위험에 처해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합니다.

어떻게?



- 전화 : 국번없이 112
-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 62조에 의해 보장됩니다.

아동학대_신고 절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주의사항★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아동학대 신고시, **보호자에게 신고내용을 알리는 등 아동학대 증거가 은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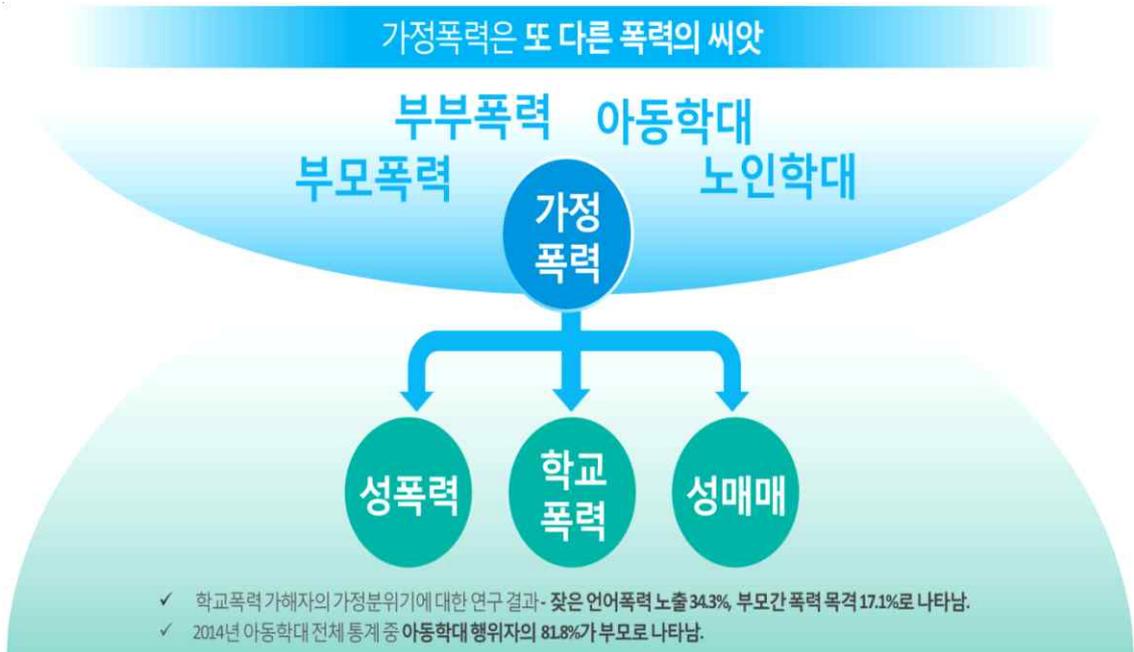
가정폭력 예방 학부모 교육 연수자료

1.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폭력이란 수단을 가지고 상대방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
-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모든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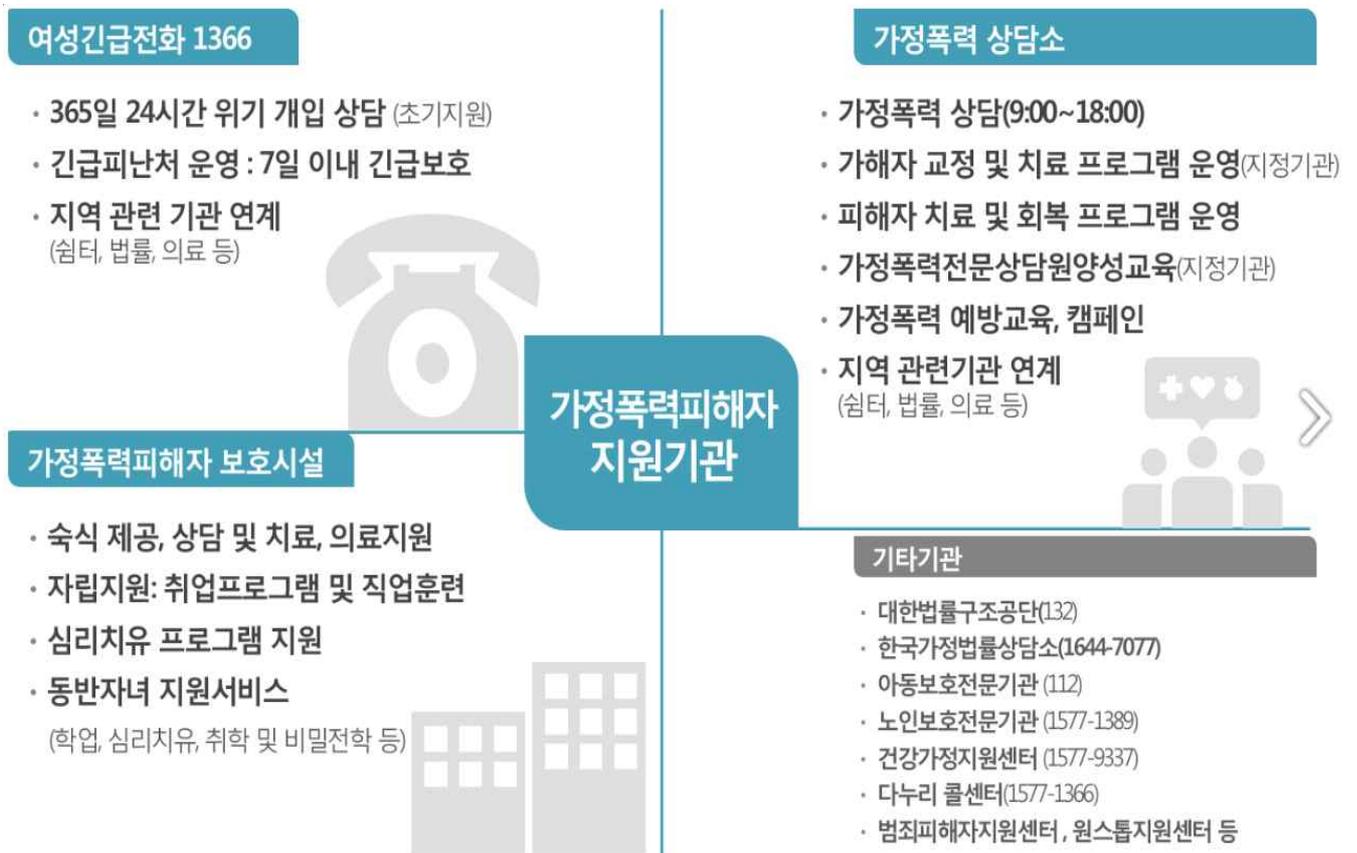
2. 가정폭력은 다른 폭력의 근본 원인



3. 가정폭력의 대처방법

- 혹시 지금 피해자라면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 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 112나 119, 1366 등에 신고한다.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조금이라도 비상금을 마련해 둡니다.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갈 곳과 연락할 사람을 정해둡니다.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4. 가정폭력 피해지원 기관



학부모와 함께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2. 학교폭력의 유형

언어폭력, 신체폭력, 위협 및 협박, 괴롭힘, 사이버폭력, 금품갈취, 따돌림, 성폭력, 폭력써클 가입유도, 강제적인 심부름 등 여러 유형이 있음

3. 학교폭력의 이해

1. 사소한 장난, 정서적 괴롭힘도 학교폭력입니다.

침뺨기, 눈 흘기기, 머리를 툭툭 건드리는 것이 학교폭력일까요? 네, 모두 학교폭력입니다. 분명하게 드러나는 신체적인 폭력이 아니라도 휴대폰 문자, SNS를 통한 조롱, 손쉽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괴롭힘도 피해학생이 우울, 분노, 불안 등의 감정을 느낀다면 '폭력'입니다.

2. 학교폭력은 피해학생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교사와의 상담 등의 방법이 있음에도 피해학생은 보복이 두려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래 친구들과 학부모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이 있어야만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의 늪을 헤쳐 나올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은 아이들이 진급하면서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일진회'등 청소년 폭력써클에 의한 집단폭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웃학교 일진회와 피해학생의 신상정보를 공유하여 피해학생이 전학을 가더라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4. 학교폭력, 신고가 최선의 예방입니다.

학교폭력의 발생을 교사, 부모, 학교, 경찰 등에 즉각적으로 알릴 때 비로소 가해학생의 설 자리는 좁아지고 학부모 폭력을 휘두를 수 없게 됩니다. 신고는 과거의 폭력, 현재의 폭력, 미래의 폭력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부모가 알 수 있는 학교폭력의 징후

피해학생 부모의 경우	가해학생 부모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사실을 은폐, 축소하지 마세요. ▶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 도피하지 마세요.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절대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라며 지지해주세요. ▶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려주세요. ▶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메세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 ▶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세요. 대화와 관심, 자녀의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줍니다. ▶ 보호해주세요.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려 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크다며 정당화하지 마세요. ▶ 회피하지 마세요. 불안, 걱정과 두려움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세요. 화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요. ▶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5. 자녀의 학교폭력, 이렇게 대처하세요!

피해학생 부모의 경우	가해학생 부모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를 탓하지 마세요. 학교폭력은 당신 자녀의 문제가 아닙니다. ▶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피해사실을 은폐, 축소하지 마세요. ▶ 힘든 내색하지 마세요. 부모가 절망하면 아이는 더 움츠러듭니다. ▶ 보복하지 마세요. 보복으로 아이의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 도피하지 마세요.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절대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라며 지지해주세요. ▶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려주세요. ▶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메세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 ▶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세요. 대화와 관심, 자녀의 생활에 즐거운 변화를 줍니다. ▶ 보호해주세요. 교문 앞에서 아이를 기다려 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인하지 마세요. 또 다른 가해 행위입니다. ▶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크다며 정당화하지 마세요. ▶ 회피하지 마세요. 불안, 걱정과 두려움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가 자포자기하면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집니다. ▶ 가해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 잘못을 인정하세요. 아이의 잘못과 부모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 아이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가지세요. 화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요. ▶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6. 학교폭력근절 7대 실천정책

<p>1. 학교장과 교사의 권한이 강화됩니다. 학교장은 가해학생 즉시 출석정지 조치, 학기당 1회 이상 담임교사와 학생 1:1 면담실시, 학부모에게 면담결과 통지, 학교폭력에 따른 상담 치료사향을 학생별로 누적관리하며 생활지도, 학교폭력 징계사향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p> <p>2. 학교폭력에 신속하게 대처 예방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대표전화 '117' 24시간 운영, 연1회 국가수준 학교폭력 실태조사 초4~고3학생 대상 실시, 가해학생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보복폭력에 대한 징계 강화(보복할 경우 출석정지기간 제한없음), 피해학생의 심리상담, 일시보호, 치료비용을 학교안전공제회 우선 부담 후,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 행사</p> <p>3. 건전한 또래문화를 만들어갑니다. 학생들에게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임을 체계적으로 교육, 모든 학생에게 정서행동발달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게임, 인터넷중독을 포함한 학교폭력 징후 조기 발견 후 생활지도, 사이버 상담 활성화(굿바이학교폭력스마트폰 앱, 네이버 상담 등)</p> <p>4. 학부모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학부모의 자녀이해를 돕기위한 '학부모교육' 대폭 확대, 학교설명회, 핵심정책 학부모교육을 연2회 일과후 개최, 학기당 1회이상 학부모와 교사간 상담 실시, 가해학생 학부모 특별교육이수 의무화(특별교육 미이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p> <p>5. 아이들의 건강한 인성을 키웁니다. 학년초, 규율 준수를 위해 학생·학부모는 학교생활규정에 동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인성영역 기재를 강화, 입학사정관 및 자기주도학습전형 평가요소로 활용</p> <p>6. 가정의 교육기능 회복을 위해 사회가 함께 합니다.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은 정시퇴근하여 '밥상머리교육' 실천,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토요캠프, 가족캠프, 가족봉사 프로그램 확대</p> <p>7. 게임·인터넷 중독 등 유해요인을 차단합니다. 게임,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첫다운제(12시 이후 접속차단)'강화, 비교육적 게임물에 대한 심의 강화, 학교는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 지도 강화</p>
--

도박 예방 학부모 교육 연수자료

!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도박이라고 합니다. 도박은 경쟁을 포함하는 놀이이고, 금전을 추구하는 행위이며, 승패가 대체로 우연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바둑을 두면서 돈을 건다면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도박의 종류?

구분	도구/게임	종류
오픈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간 : 축구, 야구, 당구, 골프, 권투, 볼링, 자전거, 자동차, 모터보트(선수) 인간/동물 : 말(선수) 동물 : 개, 소, 닭, 거북이, 미꾸라지, 물방개, 타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경기 : 경마,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토토, 프로토) 동물경기 : 경견, 투견, 투계, 소싸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구/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기구 : 윗, 주사위, 장기, 바둑, 체스, 화투, 골패, 마작 도박용 기계 : 스크린 경주, 빙고, 룰렛, 슬롯머신, 전자오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하우스 도박 바다이야기, 스크린 경마, 카지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물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숫자(추첨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또, 복권
온라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게임 (예 : 바둑, 트럼프, 도박형 웹보드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불법 인터넷 게임 (사다리, 로하이, 파워볼 등)

! 왜 사람들은 도박에 빠지는가?

도박은 대중화되어 있어서 도박의 기회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박을 오락이나 여가로 여기고 도박을 시작하기 때문에 도박의 위험이나 징후를 알지 못하고 도박문제에 빠져들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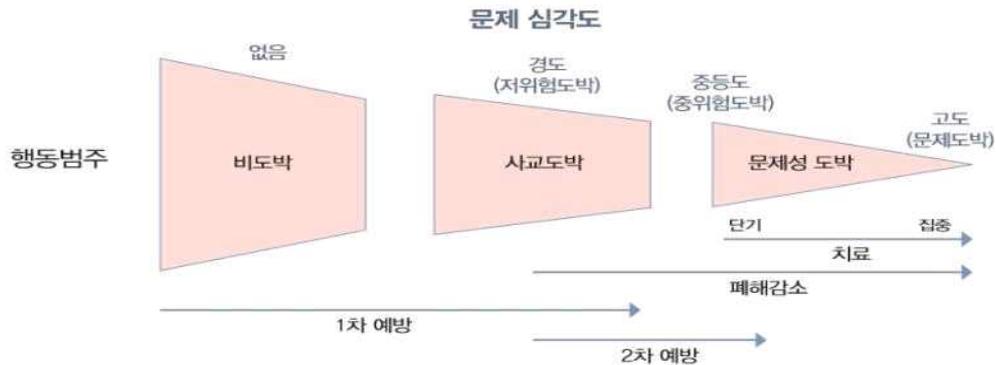
도박문제에 빠지게 되는 위험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도박 초기에 대박을 경험하여 대박에 대한 기대가 높다.
- 모험을 좋아하고 심사숙고하지 않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한다.
- 도박을 통해 잃은 돈을 만회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 자신이 도박에서 이길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 건강에 대한 염려나 신체적 및 정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도박을 한다.
-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 이에 대처하기 위해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신다.
- 자주 우울하거나 불안하며 외로움을 느낀다.
- 관심사나 취미가 별로 없고 삶의 방향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느낀다.
- 가족문제가 있거나 이혼·실직·은퇴 또는 가족친지의 사망 같은 상실이나 변화를 겪었다.
- 돈과 관련된 문제가 있다.

! 도박을 하게 되는 동기

- 금전동기 쉽게 큰 돈을 따고 싶거나 잃은 돈을 만회하고 싶은 욕구
- 흥분동기 스릴과 흥분, 짜릿함,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욕구
- 회피동기 현실문제의 압박감, 우울감, 스트레스를 잊고 싶은 욕구
- 사교동기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 놀이 및 친목의 욕구

! 도박문제 공중건강 모형



저위험도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의 도박 경험자들은 저위험 도박자에 속함 • 도박을 하는 시간과 돈을 통제할 수 있음 • 도박의 목적이 돈을 따는 것이나 승리가 아니라 오락 또는 친목
중위험도박 (전체인구 중 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박이 삶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도박자 • 도박을 하는 시간과 돈을 제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도박행동 및 결과를 숨기기 시작함 • 도박자 자신이나 가족, 친구, 동료 등 타인이나 지역사회에 사회적, 경제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초래
문제도박 (전체인구 중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성, 금단증상, 통제력 감소 • 도박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심각하게 상실됨 • 도박 때문에 중요한 활동을 포기 • 도박 때문에 일상 생활과 역할에 심각한 손상을 경험함

! 도박장애의 진단기준 (DSM-5)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문제적 도박 행동이 임상적으로 현저한 손상이나 고통을 일으키고 지난 12개월 동안 다음의 항목 중 4개(또는 그 이상)가 나타난다.

1.내성	원하는 흥분을 얻기 위해 액수를 늘리면서 도박하려는 욕구
2.금단	도박을 줄이거나 중지시키려고 시도할 때 안절부절 못하거나 과민해짐
3.조절실패	도박을 조절하거나 줄이거나 중지시키려는 노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함
4.집착	종종 도박에 집착함(예, 과거의 도박 경험을 되새기고, 다음 도박의 승산을 예견해보거나 도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생각)
5.회피성 도박	괴로움(예, 무기력감, 죄책감, 불안감, 우울감)을 느낄 때 도박함
6.추격도박	도박으로 돈을 잃은 후, 흔히 만회하기 위해 다음날 다시 도박함(chasing, 손실을 쫓아감)
7.거짓말	도박에 관련된 정도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함
8.부정적 결과	도박으로 인해 중요한 관계, 일자리, 교육적·직업적 기회를 상실하거나 위험에 빠뜨림
9.경제적 도움을 받음	도박으로 야기된 절망적인 경제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돈 조달을 남에게 의존함

출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https://www.kcgp.or.kr/pcMain.do>)

아동인권교육 학부모 연수자료

1 아이를 한 명의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식한다.

- 아이들이 찾아온 손님이라고 생각합시다.

집에 찾아온 손님이 우유 잔을 옆질렀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먼저 “괜찮습니다. 제가 치우도록 하죠.” 혹은 “컵이 옆질러졌군요. 저기 휴지가 있어요.”라고 이야기 해줄 뿐이다. 손님의 부주의를 탓하거나, 손님에게 훈계를 늘어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이들에게만은 이런 양해와 존중, 그리고 정중함을 갖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절바른 사람도 아이들 앞에서는 일장 연설을 늘어놓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또한 부모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이나 명령을 무시 할 때 심한 모욕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도 아이들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어린 것”이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우리가 이러한 유혹을 받을 때마다. 우리 스스로 아이들을 존중하고 있는지 반성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찾아온 귀한 손님이라 생각하고 존중해 봅시다.

- 비난과 욕설, 위협과 명령을 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아이들에게 오히려 악영향을 줄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의 태도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경고, 비교 등의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경고, 비교 등의 말에 대해서 소극적인 성격이 되거나 편애한다고 느끼거나 자신감을 잃고 겁을 먹는 등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효과적인 것은 정확하고 짧게 문제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2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 주의 깊게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말들은 그 내용이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아이에게는 중요한 생각이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기 어려운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사소한 이야기를 시작함으로써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이고,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아이들은 스스로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하기를 배우고 인권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 태도를 기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아이가 말을 걸어오면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만약 아주 바쁜 상황이라면 아이에게 충분히 바쁜 상황임을 이해시키고 이야기를 들어줄 시간을 마련합니다.

- “오~”, “음~”, “그래”와 같은 반응으로 아이들의 말을 인정해 줍니다.

질문과 충고를 하기보다는 아이의 이야기에 대해 호응하는 간단한 반응만을 보임으로써 아이의 감정에 대해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스

로의 감정을 캐묻는 것과 장황한 충고를 받기 위해서 교사와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경험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질문과 충고를 할수록 아이의 말은 점점 줄어들고, 아이의 말을 잘 들어 줄수록 자신의 감정이나 느낌을 아이는 더욱 잘 표현하게 됩니다.

- **아이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한다는 걸 확인시켜 줍니다.**

아이들이 즐겁거나 기쁜 상황에서의 이야기들은 부모가 그것 자체로 받아주면 상관없지만, 아이들이 슬픔이나 분노 등의 감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말들에 대해서 교사나 부모들은 “다 큰놈이 훌쩍거리긴!”, “어린애처럼 그게 뭐니?”, “아무것도 아닌 일이니 괜히 울지 마라.” 라는 식으로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으로써 다른 사람의 감정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교사나 부모에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신의 기분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아이들의 상황에 대해 공감하면서 그 감정을 확인시켜주어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속상했겠구나!”, “창피를 당해서 화가 났겠구나!”, “친구와 헤어지는 일은 참 슬픈 일이야.” 등으로 공감하는 표현을 해줍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공감해주는 말 한마디에도 안도감을 느낍니다.

- **모든 감정은 수용될 수 있지만 행동은 제한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이가 “그 녀석 죽이고 싶어요.”라고 이야기 한다고 “정말 죽이고 싶겠구나.” 혹은 “난 동수 녀석 한 대 쥐어박고 말거야.”라고 한다고 “그래”라고 반응을 보이려는 건 아닙니다. 아이의 감정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어야 합니다. 아이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권 교육의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 **아이들의 격심한 감정 반응에 대해서는 다르게 대처합니다.**

상황에 따라 아이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에는 어떠한 말도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흐느끼는 아이나 난폭하게 행동하는 아이에게는 아이의 감정이 정리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이 서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함부로 나무라는 것보다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아이들이 스스로 비난하는 것에 동조도 거부도 하지 않습니다.**

간혹 아이들은 스스로를 질책하거나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의 말 그대로 “너는 너를 바보같이 느끼는구나.” 등으로 동조하거나 “그렇지 않단다.”라는 말 모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감정 상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살(해) 예방 학부모 교육 연수자료

! 자살(해) 예방교육 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
 - 제17조(자살예방 상담·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 및 시설의 장은 자살방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자살 예방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2019 전라북도 학생 자해 현황

구분	2019년		
	남	여	계
초	11	56	67
중	31	133	164
고	17	59	76
계	59	248	307

○ 특이사항

- 학생 자살(자해) 시도의 저연령화 및 방법 다양화(방법: 손목긋기, 사혈 등)
- 자살(자해) 시도의 SNS 인증 문화 확대에 의한 모방 시도 건 증가

! 2019년 자살 관련 현황 분석

- 자살 학생 수 증가
자살 학생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원인 분석과 자살 시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요구됨
-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고위험군 학생보다 정상군 학생의 충동적 자살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자살 원인은 가정불화, 이성문제, 우울증, 성적, 미상, 기타로 부모, 친구 등과의 관계 불화에 의한 원인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자살 예방은 사회구성원 전체의 인식을 바꿔야 하므로 중앙지방정부, 교육의료 서비스기관, 지역시 민사회 차원의 적극적 협력 필요

교권보호 학부모 교육 연수자료

● 교권에 대한 이해

“교권이 바로 설 때 학교교육이 살아납니다.”

- 교권(教勸) : 교사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 활동을 해나감에 있어서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받고 학생을 자유로이 가르치고 지도하는 권위를 인정받는다.
-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는 교육할 권리를 갖으며 전문직 종사자로서 법률을 통하여 일정한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는 통상 교사의 교육권 또는 수업권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교육과정 편성권, 교과서 작성권, 교재 채택 및 선정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지도 및 징계권 등을 포함한다.
- ‘학생 인권’과 ‘교권’이라고 하는 두 개념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권리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다. ‘교권’신장이 ‘학생 인권’신장으로 이어지고, ‘학생 인권’신장이 ‘교권’신장으로 이어질 때 모두가 행복한 교육이 실현될 것이다.

● 교권침해 유형 및 조치사항

- ‘교권침해’란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보호자 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명예훼손·협박·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말한다.
-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에는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안전사고, 재물 손괴, 수업 방해, 교원에 대한 성희롱, 사이버 매체 폭력 등이 있다.

구분	내 용	조치사항
학 생	교원에 대한 폭언, 위협, 폭행, 성희롱 수업진행 방해, 명예훼손 사이버 매체 폭력 등	심각 정도에 따라 반성문 서면사과, 교내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교권보호위원회 소집 등
학부모	교원에 대한 폭언, 위협, 폭행 안전사고 책임전가 및 배상 요구 학교폭력 책임전가 및 배상 요구 등	심각 정도에 따라 구두 및 서면사과, 재 발방지 각서, 특별교육이수, 교권보호위 원회 소집, 경찰수사 의뢰 등

● 교권보호 주요 추진 내용

-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조치 강화
- 교권침해 예방 역량 강화 -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1년 2회 이상 교권보호 교육 실시
- 학교교권보호위원회(학부모위원 2인, 지역위원 1인, 교원위원 3인) 조직 및 운영

● 교권침해 예방

-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교권침해는 주로 폭언, 욕설, 명예훼손으로 인한 교권침해가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휴대폰 문자 메시지 및 SNS(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통해 교사에게 욕설이나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페, 채팅방에 교사에 대한 공개적인 비방, 욕설 글을 남기는 등의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
 - 명예훼손 피해는 폭언·욕설·협박 등의 부당 행위와 유사하지만,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교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인터넷 게시판, 언론 등에 허위사실을 게재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전보 요구나 사직 강요, 허위사실 적시로 사법기관에 고소하는 등 학부모가 개입하여 교권침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2항
 -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

Ⅰ 학부모 학교 참여 십계명 Ⅰ

- ☞ 학부모 학교 참여는 자녀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 ☞ '내 아이'만을 위한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함께 잘 키우기 위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 ☞ 학교와 선생님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태도로 참여합니다.
- ☞ 학부모의 권리와 함께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합니다.
- ☞ 학교와 학부모회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합니다.
- ☞ 학교와 적극적으로 소통합니다.
- ☞ 가정에서의 학부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합니다.
- ☞ 학교생활에 대해 평소에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 ☞ 되도록 많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합니다.
- ☞ 학부모 교육 등에 지속적으로 참석하여 늘 배우는 자세로 참여합니다.

“학부모의 참여가 더욱 좋은 학교를 만듭니다.”

보건교육 학부모 연수자료

성폭력예방, 흡연예방, 양성평등교육

1 성폭력 예방

우리의 아이, 이런 환경속에서 자라야합니다.

성폭력 가해자는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으며, 아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친구나 가족, 이웃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아이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아동성폭력은 아동의 집, 학교 등 아동과 근접해 있는 곳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가정, 학교 등 일상생활에서부터 예방이 이루어져야합니다.

▸ 성폭력 범죄자는 어떤 아이를 두려워하는가?

1 사랑받는 가정, 안전한 가정환경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서로에게 마음이 열려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는 부모 등 가족과의 친밀도가 높고, 가족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성폭력 범죄자가 아이에게 접근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2 '질문이 많은' 부모

부모가 아이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은 아이에게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모든 세부사항에 대해 질문이 많은 부모는 아이의 일상생활을 거의 다 파악하고 있으므로 성폭력을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3 신체적인 애정 표현을 많이 받은 아이

신체적으로 애정 표현을 자주 받은 아이는 애정에 굶주려 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받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긍정적인 접촉을 많이 받은 아이는 가해자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오는 '가장된 애정'이 자신의 부모 등에게 받은 애정과 다름을 직감적으로 구분하게 되고 이러한 애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4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아이

부모와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는 아이는 범죄 상대로 위험부담이 매우 큼니다. 성폭력 범죄자는 이러한 아이들보다는 좀 더 안전하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아이를 택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부모의 입장에서 자신이 아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진다고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아이와 단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하는지, 언제 하는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성폭력 예방의 핵심은 아동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분위기가 잘 형성되어 있고, 부모가 아동의 입장에서 얼마나 잘 들어주고 반응을 하는가입니다.

<출처 : Edmund Burke, Sexual Abuse Prevention - How to abuse-proof your child>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2011) 아동성폭력 예방교육 실천매뉴얼 이현혜

2 음연 예방

1. 담배는 청소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 청소년 흡연은 성인 흡연 보다 나쁘다
 - 청소년기는 키가 1년에 10cm까지 자랄 정도로 세포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키 뿐 아니라 폐를 비롯한 신체 장기 모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담배를 일찍 피우면 그 유해성분이 세포 깊숙이 침투하여 해독이 2-3배 이상 큽니다.
- ❖ 청소년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 심합니다.
- ❖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하면 폐암 사망률이 성인에 비해 높습니다.
 - 15세 이하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사람은 25세 이후에 담배를 시작한 사람보다 폐암 사망률이 18.7배나 높습니다.
- ❖ 청소년 흡연은 두뇌 활동에 영향을 주어 사고 능력이 떨어지고 정서적 발달에 해롭습니다.
- ❖ 담배에 포함된 여러 가지 유해물질에 대한 해독능력이나 저항능력이 성인에 비해 약합니다.
- ❖ 금단현상이 쉽게 나타나 담배를 끊기가 어렵습니다.

2.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는 방법

- ❖ 담배 연기가 있는 곳은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 ❖ 식당에서는 금연석을 이용합니다.
- ❖ 자주 창문을 열어 환기 시킵니다.
- ❖ 무가당 껌이나 과자를 준비하여 필요 할 때 드립니다.
- ❖ 흡연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엔 집 밖에서 피우도록 부탁드립니다.
- ❖ 흡연 가족이 금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이렇게 해주십시오.

1. 가정에서 자녀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맙시다.
 2. 혹시 흡연을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금연을 하시어,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담배와 멀어지도록 해 주십시오.
 3. 자녀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흡연을 하시는 부모님이 계시면, 간접흡연은 직접 흡연보다 건강에 더욱 유해하니 흡연 시 에티켓을 지켜주십시오.
 4. 담배 판매자는 모든 청소년이 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신분을 확인한 후 성인에게만 담배를 판매하도록 합시다.
- ◆ 우리 아이들을 흡연의 유혹으로부터 지키고, 간접흡연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건강지킴이”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3 양성평등 교육

1. 양성평등이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손상당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생활에 참여하는 데 장애가 되어서도 안 되며, 가족과 사회의 번영에 동참하는 길이 봉쇄되어서도 안 되며, 인류에 공헌할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데 낙오되어서는 안 된다는 개념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한 가정 내에서 부부가 상호 존중하고 인정을 할 때 그 가정이 화목하듯이 사회조직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상호 존중하고 인정을 할 때 사회적 조화가 잘 이루어져 건강하고 행복한 공동체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2. 가정 내에서 양성평등 실천 전략

1) 가정 내 부부간의 평등

남편과 아내가 성적 구분에 의해 역할분담이 되어 지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돈벌이, 집안일, 육아, 의사결정을 분담하는 부부를 평등하다 말합니다.

2) 자녀 양육·교육에 있어서의 평등

-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교육
-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지도
-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임을 지도
- 진로, 학업 선택, 클럽활동 선택 시 남자와 여자의 영역이 따로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배제 되도록 지도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여 격려함.
- 학업성취나 수행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보다 개인의 차이가 더 크다는 점을 강조
- 어렸을 때부터 딸과 아들에게 예술이나 체육을 함께 즐기며 심신이 모두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키움.
- 아들이 친절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라면 칭찬해주고 그렇지 않다면 감성을 키워줌
- 딸들에 대해서는 예의바른 행동과 여성스러운 행동을 구별하도록 함. 수줍어하고 침묵을 지키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여성이 되지 않도록 일깨워줌.

3) 성 고정관념

일상생활에서 성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드러내기 쉬운 말을 하고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자는 얌전하고 나서지 말아야 한다. - 여자는 인물만 있으면 공부는 좀 못해도 상관없다. - 여자가 선머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쳐? - 너무 똑똑하고 건방져서 시집가기 어렵겠어. - 여자애가 칠칠치 못하게...
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자는 직업세계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높은 데까지 승진해야 한다. - 남자가 그런 것 가지고 토라지고 왜 이렇게 속이 좁아? - 남자는 절대로 울면 안 돼. - 남자아이가 그것도 못하고 계집애처럼 울고... - 사내 녀석이 부엌엔 왜 들어와?

교외체험학습(출결상황) 안내

-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장이 정하여 출석해야 할 수업일에 등교하여 학습활동에 참여해야 합니다.
- 학생의 보호자는 학생이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사유 발생 전에 담임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통보가 어려운 경우 사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합니다.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 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기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따른 학습부진아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3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다음의 경우에는 **질병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 받는 건강장애 학생이 결석한 경우

- ▶ 3일 이상 질병 결석: 결석계 + 진단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1가지 제출
- ▶ 1 ~ 2일 질병 결석: 결석계 +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확인서, 투약봉지 중 1가지 제출

□ 다음의 경우에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다음의 경우에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학생이 **교외체험학습**을 원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2주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교외체험학습 시기는 연중 실시하되 특히, 가족이나 친인척 행사 때에 실시
- 가정의 애경사가 있거나 친인척이 타 시도, 외국 등에 거주할 경우 실시하면 효과적임.
- **보호자 등***이 학생과 함께 다양한 학교 밖 체험을 하고자 할 경우 학생·보호자의 신청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실시할 수 있음.

※ **보호자 등** :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

- **실시 3일 전까지** : ‘교외체험학습 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실시 후 5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체험학습 보고서 및 증빙서류(보호자 동행 출입국 증명 또는 보호자 동행 항공탑승권 등_보호자, 학생 모두 제출)를 학교에 제출**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 기타 필요한 사항이나 각종 서식

- 학교(227-1851) 또는 담임교사에게 문의
- 학교 홈페이지(<http://www.handoul.es.kr> 공지사항 2439번)를 참고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안내

▶ 주3회 (월·수·금) 프로그램 ◀

운영시간	월	화	수	목	금
	① 12:40-1:20 ② 1:30-2:10 ③ 2:20-3:00 ④ 3:10-3:50			① 1:30-2:10 ② 2:15-2:55 ③ 3:00-3:40 ④ 3:45-4:25	
수강료	28,000원 (교재비, 재료비 별도)		수강 정원	프로그램별 60명	
프로그램 장소 연락처	독서논술 독서논술실(3층) 010-8517-2647	로봇과학 로봇과학실(3층) 010-9391-8013	미술 미술실(3층) 010-2312-3037	바둑 바둑실(2층) 010-5757-7038	바이올린1 바이올린실(3층) 010-3339-5985
	주산 주산실(3층) 010-5737-9679	중국어 중국어실(3층) 010-7566-2688	컴퓨터1 컴퓨터1실(1.3.5학년) 010-6617-7768	컴퓨터2 컴퓨터2실(2.4.6학년) 010-6626-7994	한자1 한자1실(3층) 010-7609-3925

▶ 주2회 (화·목) 프로그램 ◀

운영시간	월	화	수	목	금
			① 1:30-2:10 ② 2:15-2:55 ③ 3:00-3:40 ④ 3:45-4:25		① 1:30-2:10 ② 2:15-2:55 ③ 3:00-3:40 ④ 3:45-4:25
수강료	19,000원 (교재비, 재료비 별도)		수강 정원	프로그램별 60명	
프로그램 장소 연락처	과학탐구 과학2실(3층) 010-8668-8594	수학 수학실(3층) 010-9224-8707	드론 드론실(3층) 010-6726-3466	무용 무용실(4층) 010-6455-2215	바이올린2 바이올린실(3층) 010-8644-3996
	종이공예 종이공예실(3층) 010-3113-5461	컴퓨터3 컴퓨터2실(1~6학년) 010-9535-0431	플루트 플루트실(4층) 010-9080-1294	한자2 한자2실(3층) 010-7126-3780	

▶ 주2회 (화·금) 프로그램 ◀

운영시간	월	화	수	목	금
			① 1:30-2:10 ② 2:15-2:55 ③ 3:00-3:40 ④ 3:45-4:25		
수강료	19,000원 (교재비, 재료비 별도)		수강 정원	프로그램별 60명	
프로그램 장소 연락처	배드민턴 강당(2층) 010-6405-6592			음악출넘기 음악출넘기실(4층) 010-2238-1197	

▶ 주2회 (월·목) 프로그램- 농구 / 강당(2층) / 010-2968-2345 ◀

운영시간	월	화	수	목	금
	① 12:40-1:20 ② 1:30-2:10 ③ 2:20-3:00 ④ 3:10-3:50				① 1:30-2:10 ② 2:15-2:55 ③ 3:00-3:40 ④ 3:45-4:25
수강료	19,000원 (교재비, 재료비 별도)		수강 정원	60명	

▶ 주5회 (월~금) 프로그램 - 영어(원어민) / 영어실(4층) / 010-5367-4254 ◀

운영시간	월	화	수	목	금
	① 1:30-2:10 ② 2:15-2:55 ③ 3:00-3:40 ④ 3:45-4:25				
수강료	84,000원 (교재비, 재료비 별도)		수강 정원	60명	

2019 학년도 전주한들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칙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의는 전주한들초등학교 학부모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 회의 사무실은 전주한들초등학교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의는 학교 교육공동체의 일원인 학부모 및 보호자가 조직을 통해 서로 단합하고, 친선을 도모하며, 학교 교육을 이해하고, 가정교육의 정보를 교환하며, 학교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과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언과 지원활동을 통해 새로운 학교 문화를 창조하는데 있다.

제4조 (사업)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1.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사업
2. 회원의 교양 교육을 위한 사업
3. 지역사회 및 학교를 위한 봉사 사업
4. 회원 상호간 친선 사업
5. 기타 본회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원

제5조 (회원) 본 회의 회원은 전주한들초등학교 재학생의 부모 또는 그 보호자로 한다.

제 3 장 임원

제6조 (임원) 본 회의는 학부모회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과 녹색 교통안전 도우미 회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의 임원을 둔다.

제7조 (학급, 학년대표) 각 학급은 학급대표 1명, 각 학년은 학년대표 1명을 둔다.

제8조 (임원의 선출) 임원선출은 정기총회 시 학년대표 6명이 먼저 학부모회장 1명을 학년대표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선출된 회장은 학년대표 중에서 녹색 교통안전 도우미회장 1명을 지명하고, 기타 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년대표 중에서 선출한다. 단, 본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위원은 학부모회 임원이 될 수 없다.

제9조 (학급, 학년대표 선출) 각 학급대표 선출은 총회 시 참석한 학급 학부모회원들이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1명의 대표를 선출(세대별 1명만 투표에 참가)하되, 녹색 교통안전 도우미회원 중에서 학급대표를 선출하거나 또는 선출된 학급대표가 녹색 교통안전 도우미 회원이 되어야 한다. 각 학년대표 선출은 총회 시 선출된 학급대표들이 학급 대표들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1명을 선출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정기총회일 다음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자녀가 졸업한 학부모 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일까지 유지한다. 그리고 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3. 총무는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연락과 홍보를 담당한다.
4. 녹색 교통안전 도우미회장은 녹색 교통안전 도우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5. 녹색 교통안전 도우미회 부회장, 총무는 학부모회 부회장, 총무의 임무에 준한다.
6. 모든 임원은 유대를 통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학년의 업무를 추진할 때는 각 학급 대표를 통하여, 직접 학년 회원들과의 연락과 위임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 4 장 회 의

제12조 (회의) 본회는 정기 총회, 임시 총회, 임원회의, 학급대표회의 등을 개최한다.

제13조 (정기총회) 정기 총회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임원선출 및 회칙 개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다.

제14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 시 또는 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회원과 반수의 요청이 있을 시 개최한다.

제15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교장의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시 개최한다.

제16조 (학급대표회의) 학급대표회의는 본 회의 중요 안건이 있을 경우, 임원회의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제17조 (의사 결정) 모든 회의 시 의사 결정은 참석인원의 과반수(세대별 1명 기준) 찬성이 있을 때 가결된 것으로 하나 임원회의만은 재적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 5 장 활 동

제18조 (활동) 본 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에 참여한다.

1. 학교 교육발전과 학생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수렴을 통한 의견 제시
2. 학교운영위원회에의 참여
3. 학부모 자원봉사활동 참여 및 지원 (녹색 교통안전 도우미 교통봉사활동, 독서도우미, 학교교육활동 참여 및 지원, 자원봉사활동 등)
4. 회원 상호간의 친선 및 동아리 활동
5. 교사 및 방과후학교 강사 수업공개 참여
6. 학부모 간담회 참여
7. 학부모 연수회에 참여

제 6 장 산하 단체

제19조 (산하 단체) 본회는 녹색 교통안전 도우미회, 독서도우미회, 동아리 등의 산하 단체를 둘 수 있다.

제20조 (녹색 교통안전 도우미회) 녹색 교통안전 도우미회는 학부모 중 희망하는 학부모

로 구성하고 학생 등교 시 교통봉사활동을 하며, 경찰청 주최 교통안전 연수와 교통지도에 관한 교내외 활동에 참여하고 학부모들의 교통봉사활동을 이끌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21조 (기타 단체) 독서도우미회와 동아리 등은 학부모 중 희망자로만 구성하고 필요한 단체의 대표와 임원은 회원들의 민주적 선출방식에 의해 적정 인원을 두어 운영하여야 한다.

제22조 (단체 활동 승인) 각 동아리의 회장은 회원명단과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학부모회장에게 제출하여 학부모회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받은 후에 활동을 개시하여야 한다.

제 7 장 회칙개정

제23조 (회칙 개정) 본회의 회칙은 정기 총회에서 출석회원 1/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개정한다.

부칙

제1조 (회칙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 (효력) 본 회 회칙은 2017년 3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1조 (회칙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 (효력) 본 회 회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

제1조 (회칙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2조 (효력) 본 회 회칙은 2019년 3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끝.

2020학년도 학교회계 세입·세출 본예산서

<세 입>

(단위 : 천원)

과 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1. 이전수입		1,028,354	609,693	418,661	
○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입		1,028,354	609,693	418,661	
- 학교운영비전입금	학교기본운영비	575,322	564,991	10,331	33학급 890명
	유치원기본운영비	45,688	44,702	986	2학급 34명
- 급식비지원금	급식비	407,334		407,344	
2. 자체수입		748,550	1,288,382	-539,832	
○ 학부모부담수입		745,050	1,282,882	-537,832	
- 급식비	초등급식비		368,681	-368,681	
	유치원급식비		13,035	-13,035	
	교직원급식비	37,050	35,150	1,900	
- 우유급식비	우유급식비	36,100	39,710	-3,610	
- 방과후학교활동비	방과후학교운영비	575,100	672,480	-97,380	
	돌봄교실간식비	11,000	11,000	0	
- 현장체험학습비	1-6학년 현장체험학습비	45,600	41,906	3,694	
	6학년 테마식현장학습비	30,600	31,200	-600	
	학생임원리더십캠프운영비		1,320	-1,320	
- 청소년단체활동비	스카우트활동비		6,000	-6,000	
- 졸업앨범대금	졸업앨범대금	9,000	9,000	0	
- 기타수익자부담수입	영재교육원선발전형료	600	600	0	
- 누리과정비	유치원누리과정비		52,800	-52,800	
○ 행정활동수입		3,500	5,500	-2,000	
- 이자수입	이자수입	3,000	5,000	-2,000	
- 기타행정활동수입	기타수입	500	500	0	
3. 기타수입		10,000	12,606	-2,606	
○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10,000	12,606	-2,606	
세입합계		1,786,904	1,910,681	-123,777	

<세 출>

(단위 : 천원)

과 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1. 인적자원 운용		7,970	8,973	-1,003	
○ 교직원대체인건비	기간제교원인건비	320	768	-448	
○ 교직원연수	자율연수, 청렴교육, 퇴직예정자교육	5,900	6,400	-500	
○ 교직원복지	동아리운영 강사비, 운영비	1,750	1,805	-55	
2.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607,907	556,268	51,639	
○ 학교급식운영		482,594	458,676	23,918	
- 우유급식비	우유급식비	36,100	39,710	-3,610	수익자
- 급식비	식재료비, 운영비, 급식도우미인건비	446,494	418,966	27,528	수익자 포함
○ 학생및교직원보건안전관리	보건실운영, 학생건강검사, 응급학생후송비	17,872	16,391	1,481	
○ 학교환경위생관리	공기질관리, 먹는물관리, 방역관리	24,001	7,151	16,850	
○ 학생복지운영		83,440	74,050	9,390	
- 학생교과서구입	학생교과서구입	74,440	65,050	9,390	
- 졸업앨범제작	졸업앨범제작	9,000	9,000	0	수익자
3. 기본적 교육활동		206,834	230,075	-23,241	
○ 교과활동지원	교과협의회, 학습준비물, 기 초학력지도, 보충과정, 보결 수당	33,540	32,910	630	
○ 과학 교과활동	실험실습재료, 과학교재교구구입	11,350	11,300	50	
○ 체육 교과활동	체육교육물품구입, 피복비	1,600	1,350	250	
○ 예술교과활동	악기구입 및 수리	1,000	2,000	-1,000	
○ 외국어 교과활동	영어체험센터차량임차료, 영어체험실운영비	2,200	1,800	400	
○ 특수교육 교과활동	전일제통합학급운영	600	900	-300	
○ 유치원 교과활동		22,622	69,634	-47,012	
- 교과운영	운영계획서 제작, 행사운영비	5,100	2,500	2,600	
- 현장체험학습활동	차량임차료및체험료		394	-394	
- 자율연수	교육경비	200	200	0	
- 독서활동운영	도서구입비	2,300	590	1,710	
- 교과운영	교육용교재구입, 간식구입, 교구장 구입	4,000	2,400	1,600	
- 교원대체인건비	하모니인건비등	5,000	7,350	-2,350	
- 보결수업관리	보결수당	500	200	300	

과 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 자율활동	학급교육활동경비	500	600	-100	
- 청소용품비	청소용품구입	700	1,200	-500	
- 학습준비물지원	학습준비물구입	3,722	1,000	2,722	
- 방과후과정운영비	방과후보조인력초과근무수당	600	400	200	
- 누리과정운영	교육과정 및 방과후과정 운영		52,800	-52,800	
○ 정보교과활동	토너및드럼교체,전산장비 수리,인터넷통신비	26,424		26,424	과목 변경
○ 자율활동		28,748	29,995	-1,247	
- 통일교육	통일교육비	0	0	0	
- 꿈기발표대회	행사용품비	3,300	3,400	-100	
- 학급교육활동경비	학급교육활동경비	9,900	9,900	0	
- 체육대회	체육대회용품, 각종대회출전, 다과구입	4,823	4,823	0	
- 학생회자치활동	어린이회활동,학급동아리 운영, 학급자치활동 운영	4,545	5,772	-1,227	
- 4~6학년 과학행사, 과학축전행사	행사용품 구입, 운영비	4,900	4,500	400	
- 과학경연대회	과학탐구대회 출전경비, 물품구입	120	400	-280	
- 6학년스포츠클리그전	심판수당, 용품구입	1,160	1,200	-40	
○ 현장체험학습활동		76,200	73,106	3,094	
- 수학여행	숙식비, 입장료, 차량비	30,600	31,200	-600	
- 현장체험학습	차량비, 체험비, 입장료	45,600	41,906	3,694	수익자
○ 동아리활동		0	6,000	-6,000	
- 스카우트운영	스카우트 참가비, 지도교사등록비, 연수비		6,000	-6,000	수익자
- 학생동아리활동	강사수당	0	0	0	
○ 진로활동	5학년 적성검사비, 진로체험활동 학습준비물	2,550	1,080	1,470	
4. 선택적 교육활동		600,800	696,980	-96,180	
○ 방과후학교 운영		586,100	683,480	-97,380	
- 방과후학교운영	강사비, 교재비	575,100	672,480	-97,380	수익자
- 돌봄교실운영	간식비	11,000	11,000	0	수익자
○ 독서활동운영	도서구입비, 도서관운영비, 비품구입비	14,100	12,900	1,200	
○ 창의교육운영	영재교육원선발전형료	600	600	0	수익자
5. 교육활동 지원		72,349	108,782	-36,433	
○ 교무학사운영		22,953	31,953	-9,000	

과 목	산출내역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비고
- 교육과정평가	학교교육과정제작, 행사용품(학교공개의날 등)	2,405	2,675	-270	
- 입학식및졸업식	입학식, 졸업식경비	3,332	3,332	0	
- 교무학사운영	학사달력, 행사운영용품구입	3,600	4,000	-400	
- 청소용품	청소용품, 종량제봉투구입	6,566	4,816	1,750	
- 환경정리	환경정리일용인부임, 환경정리용품구입		10,080	-10,080	
- 교육활동홍보	학교신문인쇄	4,250	4,250	0	
- 교육과정평가	워크숍운영 및 식비	2,800	2,800	0	
○ 학생생활상담지도	배움터자원봉사활동비, 상담실운영	0	5,540	-5,540	
○ 학교폭력예방	학교폭력예방연수비, 활동지원비	9,140	1,000	8,140	
○ 학생안전교육	안전체험교육 차량비, 실습비	5,531	5,640	-109	
○ 연구학교운영	전문적학습공동체운영	11,000	12,000	-1,000	
○ 방송실운영	방송장비구입, 수리	3,225	3,225	0	
○ 정보화실운영			26,424	-26,424	과목 변경
○ 교육환경개선		20,500	23,000	-2,500	
- 비품구입	컴퓨터(16대), 모니터(5대), 프린터(4대), 냉난방기(1대)	20,500	23,000	-2,500	
- 환경개선	교내환경개선비	0	0	0	
6. 학교 일반운영		281,132	289,603	-8,471	
○ 부서기본운영	사무용품, 여비, 업무추진비	47,108	46,908	200	
○ 병설유치원기본운영	공과금, 시설수선비, 토너및드럼, 사무용품, 여비	23,066	27,868	-4,802	
○ 학교시설장비유지	공공요금, 시설관리비(시설소수선 및 유지관리, 경비, 청소원인건비)	207,758	212,627	-4,869	
○ 학교운영위원회운영	학교운영위원회간담회	1,200	1,200	0	
○ 학부모협력	학부모교육 강사비, 교육재료비	2,000	1,000	1,000	
7. 학교 재무활동	예비비	9,912	20,000	-10,088	
세출합계		1,786,904	1,910,681	-123,777	

전주한들초등학교 시설 공사 및 환경개선사업 현황

□ 2019학년도 시설공사 및 환경개선 사업 내역

(단위:천원)

순	사업기간	사업내용	금액	비 고
1	2019. 4. 3.~ 4.10.	운동장 도장 공사(축구골대, 조희대, 음수대)	1,815	학교자체집행
2	2019. 4.12.~ 5. 7.	전담실 파티션 설치	2,340	학교자체집행
3	2019. 4.12.~ 4.24.	학생용 책상 상판 교체(350개)	7,737	학교자체집행
4	2019. 4.18.~ 4.23.	유치원 환경개선공사(현관루바 및 씬팅)	5,130	학교자체집행
5	2019. 4.23.~ 4.29.	시설물 소수선 공사(축구골대보강, 화장실비누받침설치, 홈통접이쇠절단, 교실출입문 보수 등)	2,049	학교자체집행
6	2019. 4.24.~ 5.13.	보행매트(야자매트) 설치	2,578	학교자체집행
7	2019. 4.30.~ 5.13.	유치원 도서실 환경개선(책꽂이 및 매트 구입)	4,590	학교자체집행
8	2019. 5.13.~ 5.31.	일반교실 암막블라인드 설치	2,958	학교자체집행
9	2019. 5.13.~ 6.10.	탈의실 설치(라커구입, 커튼설치, 기타물품 구입)	5,000	학교자체집행 (목적사업비)
10	2019. 5.17.~ 6. 4.	2019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개선사항 보완 공사(건축, 소방, 전기분야)	5,775	학교자체집행
11	2019. 6.13.~ 6.28.	내부 계단 논슬립 설치	4,048	학교자체집행
12	2019. 6.13.~ 6.28.	1층 필로티 기둥 보호쿠션 설치	4,554	학교자체집행
13	2019. 9.26.~10. 2.	방충망 설치(영어체험실, 도서실)	720	학교자체집행
14	2019.10.24.~11.13.	칠판교체(영어체험실)	480	학교자체집행
15	2019.10.28.~10.30.	과학실 안전 모델학교 운영 (비상용 샤워부스, 폐수시약장 등 구입)	7,062	학교자체집행 (목적사업비)
16	2019.12. 5.~12.24.	각 교실 및 컴퓨터실 윈도우10 업그레이드	5,263	학교자체집행
17	2020. 1.15.~ 1.28.	남측 복도 무균직수형 정수기 설치(4대)	16,890	학교자체집행

18	2019. 6.10.~ 9. 7.	내진보강 및 환경개선공사(출입문 교체)	138,393	전주교육지원청
19	2019.10.22.~11.12	명상숲 조성	70,000	전주시청
20	2019.12. 2.~12.23.	지하실 모터펌프(부스터펌프) 교체	15,675	전주교육지원청
21	2019.12. 5.~12.26.	강당지붕 바탕 수선공사	13,967	전주교육지원청
22	2019.12.12.~12.26.	중앙현관 차양 수선공사	18,331	전주교육지원청
계			335,355	

□ 2020학년도 시설공사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예정) 내역 (단위:천원)

순	사업기간	사업내용	예정금액	비고
1	2020. 3. ~ 4.	교수매체 교체(컴퓨터외 2종)	16,700	학교자체집행
2	2020. 3. ~ 12.	초등 교사내 시설공사 및 환경개선	39,800	학교자체집행
3	2020. 3. ~ 12.	유치원 교사내 시설공사 및 환경개선	5,000	학교자체집행
4	2020. 7. ~ 8.	화장실(1~4층 중앙 및 동편) 리모델링		전주교육지원청
5	2020. 7. ~ 8.	각 실 천정형 냉난방기 교체		전주교육지원청
6	2020. 8. ~	유치원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전주교육지원청
계			61,500	

학교 교실 배치도

강당				2층	4층	3학년 연구실	3-3	3-4	3-5(대)
					3층	독서논술부 한자2부	2-6	3-1	3-2(대)
식생활관				1층	2층	2학년 연구실	2-5	2-4	2-3(대)
					1층	행정실	돌봄1		돌봄2
도서실		영어체험실 방과후영어실		4층	무용부	5학년 연구실			
과학실1	준비실	과학실2 과학탐구부, 한자1부	방과후지원실	3층	주산부	바이올린1,2부	상담실		
컴퓨터실2	서버실	컴퓨터실1	바둑부	2층	1학년 연구실				
유치원2	유치원1	유치원교사실	자료실	1층					
					1층	보건실	학부모상담실		
					2층	방송실			
					3층	기계실		전담교사 연구실	
					3층	학운위실		전담수업실	
					3층	교장실	중국어부, 드론부		
					3층	교무실	수학교과실		
					3층	로봇과학부 종이공예부		미술실	
					4층	미술실 미술부, 도형과창의		음악실 플룻부	
4층	전담수업실	5-5	5-4	수업나눔실(소)	5-3	5-2	5-1		
3층	6-6	6-5	6-4	6학년연구실(소)	6-3	6-2	6-1		
2층	2-2(대)	2-1	1-5	1-4(소)	1-3	1-2	1-1(대)		
1층	4-6(대)	4-5	4-4	4학년연구(소)	4-3	4-2	4-1(대)		